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13408 청구이의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C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단393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19.
판 결 선 고	2014. 9.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03. 4. 24. 작성의 2003년 증서 제○○

○○○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부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대부업 등록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상의 조치인 대부업 등록 유무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가 2003. 4. 24.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2002. 10. 23.자 대여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원고 B의 연대보증 채무에 관하여 작성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F와 동업으로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행위인 피고의 대부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는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규

 판사 위수현

 판사 김성겸